

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사업장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0.24.(토) MBC, “업주말만 듣다 2,100만원 체불누락. 피해자 두 번 울린 구멍난 근로감독”

2. 설명 내용

- 해당 사업장은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으로,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되어 지난 해 10월 사업장 감독에 착수하였음

- 업종 특성상 입·퇴사가 잦고, 파트타임 단기 아르바이트도 많았으며, 대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

- 수기 출·퇴근부, 근로계약서, 임금 지급 내역 등 사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최대한 징구하여 재직자·퇴사자를 특정하고,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*하였음

- * 개인별 정확한 근태 내역 확인이 어려워, 수기 출·퇴근부, 업무 단위 스케줄표, 근로계약서 상 약정된 시간 등과 대조하여 구체적 증거로서 확인되는 체불금품에 대해 판단·산정

〈감독 결과〉 재·퇴직자 포함 총 65명 (외국인 노동자 27명(19명 유학생))에 대하여 5,100만원 임금체불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, 근로자 명부, 임금 대장 등 계약 서류 미 보존으로 과태료(80만원) 부과

- * 임금체불(제36조, 제43조), 연장근로위반(제53조), 근로조건 미명시(제17조), 임금명세서 미교부(제48조), 연차휴가 미부여(제60조), 계약서류 미보존(제42조)

- 다만,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'24.8월부터 월급제로 전환*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와 출·퇴근 기록 없이 근무하였으며, 감독 착수 이전에 퇴사('25.10.12)하여 대상에서 누락 되었음

* '24년 8월 이전 시급제로 근무할 당시의 시급제 근로계약서는 존재

- 우리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, 감독 종료시점에 감독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진정 사건 등을 통해 개인별 근태내역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, 추가로 임금체불 등을 시정해야 함을 지도하였음

- 아울러, 감독을 통해 시정 지시한 내용 중 퇴직자 임금 등이 전액 청산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해 입건('26.6월)하였으며, 곧 송치할 예정임

- 언론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금품(2,100만원) 미지급 건은 감독 이후 개별 진정 사건을 제기('26.1월)하여 조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('26.10.19.)하였음

- 우리부는 앞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과정에서 피해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,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
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2-7553)
		담당자	서기관 주무관	박종길 (044-202-7528) 주성혁 (044-202-7531)
담당 부서	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	책임자	과 장	고수진 (02-2250-5862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국정원 (02-2250-5866)